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7월 2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삼성KODEX Top5Plus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8.12.28

3. 정정 사유

- 이익금 초과 분배 조항 분리,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
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목	변경전	변경후
제3조(정의)	“ 투자신탁분배금”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.	“ 투자신탁분배금”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(삭 제)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.
조항신설 및 이동	(신 설)	제41조(이익분배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 특 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(다만,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.)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

	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(추 가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1.~3.(생략) 4. 분배금: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~③(생략) ④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 零 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	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41조의2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,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1.~3.(현행과 같음) 4. 분배금: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수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~③(현행과 같음) (제41조로 조문 이동 및 법 개정사항 반영)
제43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	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(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__(이하 생략)	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(제41조의2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__(이하 생략)
제49조(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 3.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	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 3.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
부 칙	(신 설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(이익금 초과 분배 조항 분리,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)